의 안 번 호	제113호
의결연월일	2019. 5. 14.

-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9. 5. 3. 예산군수

❍ 회 부 일 자: 2019. 5. 3. 산업건설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: 2019. 5. 14.

제24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수도과장: 정재현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잘못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,

❍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상수도 요금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잘못된 용어 정비(안 제7조제4항, 제30조제2항, 제32조제2항, 제41조제1항 제3호, 제45조제1항, 제45조제2항)

○ 요금 등의 감면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추가(안 제41조)

○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(1만원)을 지급하고,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신설(안 제45제1항제4호, 제3항)

○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 일부 변경(안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2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최 광 욱)

○ **「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잘못된 용어 등 미미점을 보완하고 제41조 제1항5호의 요금 등의 감면 대상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를 추가하고,

○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1만원 포상금 지급 규정과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신설하고

○ 제29조제1항 별표2의 업종별 수도 사용요금을 개정하여 2021년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관계법령 등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**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 **「원안가결」**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